



● 국민연금제도란 ?

- ▶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20개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송출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본국 법령 적용

● 연금보험료 부담

-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지역가입자(자영자 등)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부담은 한국 국민과 동일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급여혜택

- ▶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 질병·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예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①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34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터키,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롬비아
※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는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반환일시금 지급

●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 제출서류

- 한국내 청구시 (출국 전 청구)
 - : 청구서, 여권·외국인등록·예금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등
- 외국에서 우편 청구시 (출국 후 청구)
 - : 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여권 사본, 본인 은행통장 사본
 -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는 수수료 부담 및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를 제한하오니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www.nps.or.kr ⇒ Regional Offices)